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5. 19 선고 2019나315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5. 19 선고 2019나31594 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 7. 5 선고 2017가단3092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현우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중

담당변호사 박기범

변론 종결2020. 4. 28.

판결 선고2020. 5. 19.

제1심판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 7. 5. 선고 2017가단3092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대위변제하여"를 "C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하여"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F와 G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들의 자녀인 원고와 C 명의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채무도 F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위 대출채무를 변제한 것도 피고가 아닌 C이다. 따라서 C가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채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2) 설령 C가 원고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C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임을 고려할 때 변제한 대출채무 중 30,000,000원은 본인을 위한 것이므로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만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이 경우 C는 채무자인 원고와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취득한 피고 모두에 대하여 법정대위권을 취득한다. 또한 C가 위와 같이 대출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여 취득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오로지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며, 유효한 채권양도 통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우선 F·G와 원고·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원고가 아닌 F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12의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는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F의 제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F 및 G가 이 사건 부동산 각 지분을 원고와 C에게 명의신탁 하였거나 위 대출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원고가 아닌 F라는 사실을 추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에서 살핀 증거들과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2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을 부담하고 각 지분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위 대출채무를 부담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 중 6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E조합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납부되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자 중 12,141,860원을 상환하였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C가 취득세를 포함한 등기비용과 건물 수리비 등을 부담하였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F는 C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고, C에게 위 금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C가 F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가단2586호로 위 가계수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G는 'F의 제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에 참여하게 되었고, 아들인 C의 돈으로 매각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C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10.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채무의 원금 전액과 이자 일부를 C가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와 C는 형제관계로 아버지인 G의 주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된 점, C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와 같이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한다는 채권양도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C로 하여금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거나 (예비적으로) 위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한 C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통지권한도 위임받아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까지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C가 피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위 구상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위 대출채무 중 30,000,000원은 C 자신을 위하여 변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가 위 대출채무 중 1/2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추가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류경진

판사차영욱

판사홍유정